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1차 교육위원회)
2020. 1. 15.(수) 10:00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충청북도교육감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: 2020년 1월 6일
- 회부일자: 2020년 1월 7일

3. 제안이유

- 교육장 위임 사무 중 관할구역 내 사립 고등학교·특수학교와 관련된 사항을 일부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일부개정

- 관할구역 내 고등학교이하 학교를 설치·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운영·관리에 관한 지도·감독과 관련한 사항 포함(안제5조제15호)
 - 사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 수리 및 해직 또는 징계요구
 - 사립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육에 관한 보고·조사 등에 관한 사항
- 사립 고등학교·특수학교 교감 및 교사의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 신설(안제5조제37호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안은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 관한 사항 일부를 새로 교육장에게 위임하고, 기존에 교육장에게 위임하였던 사항 중 일부는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※ 개정안의 주요 내용

구분	제5조(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)	비고
신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립 고등학교 교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 수리 및 해직 또는 징계 요구 · 사립 고등학교 교육에 관한 보고·조사 등에 관한 사항 · 공립 고등학교·특수학교 교감 및 교사의 공무국외여행 · 사립 고등학교·특수학교 교감 및 교사의 성과상여금 	제15호 시목 제15호 아목 제37호 다목 제37호 라목
삭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립 고등학교·특수학교 교감 및 교사의 공무외국외여행 	제37호 다목